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1
----------	-----

제출년월일 : 2001. 9. 24.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 지방재무회계규칙의 경리관(보건소장)과 본 조례의 기금운용관(부군수)이 이원화 되어있어 이를 일원화 함으로써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괄성을 기하고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음.

2. 주요골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종전 부군수에서 부서의 장(보건소장)으로 함.(안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4. 입법예고 : 불 필 요

5. 본 문 : 덧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부군수”를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